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 ⑥

보건관계자 교육활동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어느대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것이 며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렷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망서려졌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기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톨릭의대 이 광 목

◎..... 보건관리자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보건협회에 교육개발과 관련된 상설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여기에 다시 참여하게 된 필자로서는 옛 일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 초기의 교육과정에서 생각나는 몇가지 일을 소개하면서 회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1962년에 교육이 처음 시행될때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의 배치, 그 자격등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본다◎

근로보건관리규칙(1961.9.11)이 제정되기전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배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72조 (1)항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2)항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그들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임시로 사회부의 예규가 이용되었다. 이 예규는

어디까지나 임시적·행정적인 조치였는데 1954년 4월 12일자 社勞第323號가 바로 그것이며 사회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과 각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형식의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내용도 있었다. 우선 前文을 소개하여 본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에 관한 건수제지건에 관하여는 단기 4286년(주: 1953년) 8월 8일자로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기로 되어 있는 바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건과 작업상 발생할 위험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우려되는바 불무하오니 우선 동법규칙이 공포시행 될때까지 귀 관하(貴 管下) 각 사업장의 실정을 통찰하시어 좌기에 의하여 실시토록 조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다.”

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근로감독행정이 보사부 관할이면서 실제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시와 각

시도에 파견형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구의 예규아닌 예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내용은 후에 마련된 규칙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는데 좀 다른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

“4조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할 범위는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와 의사 아닌 보건관리자를 좌표에 의하여 배치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후에 보건관리요원이라 불렀던 명칭을 “의사 아닌 보건관리자”라 한 것이 다르다.

또 5조에는 그들의 자격이 정의되어 있었는데 (1)항은 “만 20세 이상의 의사로서 근로위생에 관한 교양을 가진자,” (2)항은 “근로위생에 관한 교양을 가진자로서 사회부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한 자”로 되어 있었다.

그후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들이 정하여 지지만 처음에는 아주 막연한 것이었고 한가지 이상한 점은 “만 20세 이상의 의사”라는 말이었다. 8.15 전후해서 4년제 중학을 졸업하고 4년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 만 20세 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월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 20세이하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20세이하의 의사는 보건관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는데 모르겠다. 또 1954년에는 4년제 중학교, 또 의학전문학교도 없어진 지 오래된 후인데 왜 이 제한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때까지 의사검정고시가 있었는데 그 자격에 연령제한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어도 만 20세이하의 의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보건관리자의 직무도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에 건강진단이 들어 있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다. 이 일 때문에 후에 의사 아닌 사람으로서 계속 보건관리자로 등록되어 의사로 행세한 사람들이 있었다. 후에 제정된 규칙(1962)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만으로 수정되었고 특히 한의사는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지금도 가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한의사를 의사로서 인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의사도 보건관

리자가 되겠다든가, 정기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할 때 어떤말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안된다든)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와 비슷한 일로서 한지의사에 관한 일이 산업의학을 하는 사람들중에 지나가는 말로서이지만 오고간 일이 있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다.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에 관한 교육은 1962년 부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가 발족한 후 당시 소장 이셨던 조규상교수가 처음 보건관리자 교육에 참여하셨던 일이 보사부에서 주최한 제 2차 사업장보건관리자 훈련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필자가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산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96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특강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해인 196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가 교육훈련의 일부에 출강하게 되었고 훈련도 본격화되었다. 이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의 교육은 근로보건관리규칙(각령 제 132호), 근로보건관리규칙시행세칙(보건사회부령 제 69호, 1962. 1.17),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 등 훈련규정(보건사회부령 제 84호, 1962. 7.12)에 의거해서 실시된 것이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규칙과 시행령은 별로 달라진 바 없으므로 생략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1962년 당시의 훈련규정을 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제 1조가 훈련기관에 관한 것인데 “국립보건원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후(1969)에 “노동청장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뀌었다.

제 3조에는 훈련의 종류와 과목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 ※ 위생관리훈련
- ※ 보건간호훈련
- ※ 직업병관리훈련

으로 구분하였고 “훈련과목으로는 “보건행정, 보건통계, 역학, 환경위생, 전염병관리, 질병관리, 보건교육, 건강관리, 노동법규, 사회학, 산

업생리학, 재해상해관리, 직업병, 환경측정법, 적성검사”로 정하고 이 주에서 훈련의 종류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요원, 신규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 등에 따라 또는 위에서 말한 3가지 훈련의 종류에 따라 과목을 달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노동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외국의 원조와 국고보조로 비용이 충당되었다. 그 후 1969년 훈련규정이 바뀌면서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보건원장이 신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들 과목들을 보면 강의 내용을 편집하기 나름이겠지만 높은 수준이라 여겨지는데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보건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보면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장에서 5년이상 위생실무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2개월간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맞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 졸업이하의 학교 경력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25·6년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인적자원이 모자랐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또 이것은 바로 산업보건사업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를, 또 얼마나 잘못되고 있었을까를 짐작케 한다.

1963년에 실시했던 훈련계획에 조규상교수, 정규철교수를 돕는 일로 필자가 처음으로 실습시간에 참가하였는데 실습시간이라해도 실습기재가 많지 않아서 환경측정기기로는 임핀저, 분진계, 소음계, 습도계, 검지관 정도였고,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적혈구·백혈구 계수, 혈액비중 측정, 혈색소·뇨검사로써 Coproporphyrin 정성, 뇨단백, 우로빌리노젠, 잠혈, 케톤체검사 등의 간이 기법을 실습케 하였었다. 지금 같으면 모든 의원급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개업의가 많아서 훈련을 받던 간호원이

나 요원들이 흥미있어 하였었다. 어느정도의 훈련효과가 있었는지는 평가해 본 일은 없지만 그 후 우리나라의 건강진단에 요즘에 쓰이는 비색지가 나오기전까지는 그런대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그러한 항목선택에 대해 비난(특히 혈액비중)도 받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고 또 그러한 항목은 일본에서 발간되어 정기건강진단에 이용되고 있던 “사진으로 본 검진수기”를 참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항목과 방법을 선택한 뒷 이야기는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전국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때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어찌되었던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손을 댔던 과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이 훈련을 맺음과 동시에 1963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결성되었음은 처음에 이야기한 바 있다. 첫 교육과 협회창설 당시에 생각나는 분들로써 당시 경성방직 보건관리자이셨고(현재까지) 대한산업보건 협회의 감사직을 맡고 계신 원세재선생님, 동일방직에 계시면서 협회 이사를 지내셨던 박봉수선생님, 방림방직의 이경린선생님 등 몇 분이 계시다. 이중 이경린선생님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의사신문에 가끔 글을 쓰셔서 글을 쓰시는 의사로 널리 알려졌던 분이었고 박봉수선생님은 저의 연구소와 함께 여공들의 피로에 관한 연구에 동참하셨던 분이시다. 물론 현재까지 관련을 갖고 계신 원선생님은 면폐증에 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었으며 지금도 여성근로자에 관한 산업의학적 연구에 많은 협조와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그 교육은 방직공장의 전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었기 때문에 모두 방직공장에 계셨던 분들이었는데 죄송스럽게도 다른 분들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사업이 뿌리를 내리던 초창기에 전임보건관리자로 일을 하셨던 분이로서 현장에서 산업보건활동에 힘쓰셨고 산업보건협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들로서 그 숨은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